

조선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우안 백내장 및 녹내장

성별	남성	나이	만 47세	직종	조선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시력이 좋았으나, 1987년 3~4월 경 작업을 하던 중 ‘라이팅홀’에 빠지면서 철 론지 프레임에 좌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처음 다쳤을 때는 양측 눈이 다 보였으나 시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2009년에 좌안 실명을 진단받았고, 2012년에 우안 개방우각 녹내장과 우안 노년성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 31년 간 일하면서 분진 및 유해물질, 빛 등에 노출이 되었고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2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비, 닥트, 보온 관련 제작과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1986년 9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6년 12월에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1986년 9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선체부에서 아크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였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생산기술부에서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업무, 수은구 설치 및 철거를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에 케이블 설치 업무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2005년에 복직했다가 2006년 또는 2007년에 양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고, 2007년에 복직하여 2016년에 퇴직할 때까지 조명 분전반에서 스탠드 등, 삼백조명등기구, 안전기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1987년 3~4월 경 작업을 하던 중 ‘라이팅홀’에 빠지면서 철 론지 프레임에 좌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2007년에 좌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9년에 좌안의 실명을 진단받았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만 47세였던 2003년에 좌안 백내장으로 A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적출술을 받았고 녹내장이 의심되었다. 근로자는 2006년 8월 30일에 B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중심정맥폐쇄를 진단받았고, 2009년에 녹내장이 합병되어 광각무의 실명상태가 되었다. 또한 C안과의원에서는 2016년 초진 진료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좌안 외상을 입은 후 발생한 각막혼탁 및 안구로 인한 실명상태가 되었다고 하였다. 우안의 경우 2012년 9월 14일에 양안의 녹내장을 진단명으로 확인하였고, 2012년 10월 22일에 우측의 노년성 백내장도 진단명으로 확인하였다. D종합병원에서 1988년 2월 3일에 작성된 의무기록에서는 근로자가 철관에 우안이 부딪혔다고 작성해 놓은 기록이 있었고, 2017년 3월에 E종합병원에서는 1998년에 우안을 blunt trauma로 다친 바 있다고 작성되어 있었다. 다만 근로자는 우안을 다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대 초반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하루 1갑 반을 흡연하였고 현재는 금연상태라고 하였다. 음주는 과거 눈 질환을 진단받을 당시 3~4번/주, 소주 1병 정도 마셨다고 하였다. 가족 중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56년생)은 만 47세이던 2003년에 좌안 백내장 적출술을 받았고 만 53세인 2009년에 좌안이 광각무의 실명상태가 되었다. 또한 만 56세인 2012년에 우안의 녹내장과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86년 9월에 입사하여, 약 30년 간 □사업장 선체부에서 용접업무(약 3년 3개월), 생산기술부에서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수은구 설치 및 철거(약 15년), 조명분전반에서 조명설치(약 11년) 업무를 수행하였다. 백내장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은 자외선 노출과 외상이 있고, 녹내장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서는 외상이 있다. 근로자는 입사 후 3년 3개월 간 아크 용접을 하면서 이후 약 15년 간 수은구 설치 및 철거를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1987년 3~4월 경에 작업을 하던 중 ‘라이팅홀’에 빠지면서 철 론지 프레임에 좌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좌안의 백내장과 녹내장, 실명, 그리고 우안의 백내장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우안의 녹내장은 업무와 관련된 외상 이력이 불분명하여,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